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63
----------	------

2017년 4월 1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4월 7일, 주찬식 의원

나. 회부일자 : 2017년 4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7년 4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찬식 의원)

가. 제안이유

화재 발생 시 불의 빠른 확산도로 인해 신속하게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경우에는 신속한 탈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유자시설에 피난기구 설치를 통한 재난약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시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노유자시설에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비용추계 등의 자료 : 원안참조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 취약계층의 주된 이용 시설인 노유자시설¹⁾을 대상으로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지원 근거규정을 설치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재난취약계층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표]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안 제57조)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시에 행정기관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각종 소방시설 설치상태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표] 참조),

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 ①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표] 소방시설 종류

구분	세부 설비목록	비고
소화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피난기구 ,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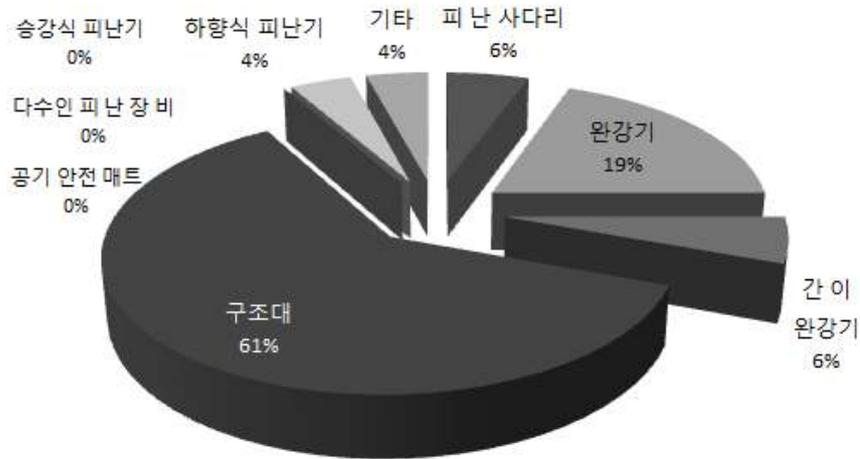
- 이 중 노유자시설 내 피난기구에 대해서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표] 참조).

[표] 노유자시설 피난기구의 적응성(「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 1] 발취)

층별	지하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참고로, 서울시립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여성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피난기구 현황을 살펴보면, 구조대²⁾(61%), 완강기(19%)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외 간이완강기(6%), 피난 사다리(6%)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참조).

2) 화재발생 시 창이나 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직접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섬유로 만든 긴 자루모양의 터널 내부를 통해 사용자의 자중에 의해 내려오는 피난기구



[그림] 시립 노유자시설의 피난기구 설치현황

- 노유자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시 복지본부의 경우, 노유자 시설에 설치된 피난기구의 노후화 또는 손상에 따른 정비나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도 국비매칭 또는 전액 시비 형태로 지원³⁾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 본 개정안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예산지원의 조례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시행과정에서 노유자시설의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여러 종류의 피난기구 중 이용자의 신체조건이나 활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피난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3) 노유자 시설물에 대한 예산지원 절차는 시설의 관리주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타당성 여부 및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서울시 내 노후한 노유자시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현대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이와 관련해 복지본부에서 추진 중인 것이 있는지?(오봉수 위원)

답변) 서울시 내 노유자시설이 6,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정비가 필요한 시설도 상당수 있음. 일시적인 조치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음.(신종우 복지정책과장)

질의) 현재 서울시가 노유자시설에 피난기구 설치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것인지?(김희걸 위원)

답변) 기존 노유자시설에 대해 기능보강·개선차원에서 노후화된 피난기구 등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음.(신종우 복지정책과장)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현행 본문 내용과 같음) ② <u>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